

서울특별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2. 7. 20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992년 5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1992년 6월 1일
- 다.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시회) 제3차위원회('92. 7.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청소과장 임경재)

가.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 의무화하고 정화청소 안내서는 청소의무사항등을 명시하여 청소시기 1개월전에 발송(안 제4조)
-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야간청소(안 제5조)
-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별 지역별 7-10일 간격으로 순회수거,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수거(안 제6조)
- 관할구역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재)

본 조례안의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2” 나호 내용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규정은 법 제25조에 신고 의무규정이 없고, 법 제53조에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홍성환의원 수정안동의

6.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92. 7. 14 홍성환 의원 외 7인
- 나. 수정이유:원안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2”나호 내용중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비하려는 것임.

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안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58조제1항관련 나호를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로 하고, (3)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미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

7. 심사결과: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기타: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

提出年月日 : 1992年5月28日

提出者 : 麻浦區廳長

1.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는 것임.

2. 주요골자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등의 관리
 -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의무화 하고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기한을 1차연장한 다음 연장기한까지도 청소를 미 실시할

경우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

-청소안내서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기, 청소용량, 청소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청소시기 1개월전에 발송함(안 제4조)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의무사항을 경찰청 고시지역으로 한하며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구청장은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고 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 동절기에는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함(안 제5조)

○분뇨수집 관계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순회 수거하며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수거함(안 제6조)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함(안 제8조)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청소수수료 부과, 징수(안 제10조)

-부과기준:분뇨는 분뇨량에,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하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중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함.

-징 수: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청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안 제10조제3항과 관련)

(단위: 원)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인 상 률	비 고	
분 노	18l	218	9.0%		
정 화 조	기 본	0/75m ³	16,840	7.0%	
	초 과	0.1 ³ 당	1,100	6.8%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7.0%	

○분뇨 관련 영업허가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함.(안 제16조)

○공중변소 민간위탁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18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안 제19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종별과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음

-과태료 부과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過怠料 賦課徵收에 관하여 이 條例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麻浦區稅 賦課 徵收規則을 準用함.

3. 制定根據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제 14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제58조

4. 條例(案): 별첨

5. 豫算措置 수반여부: 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糞尿 및 畜産廢水의 積貯처리 및 基本計劃 樹立) 區廳長은 매년 管轄 구역 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를 適正하게 處理하기 위한 基本計劃을 樹立하고 積貯처리 시설의 효율적 維持管理를 통하여 水質汚染 防止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3條(淨化槽 등의 內部清掃) ① 구청장은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同法施行規則(이하 “規則”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管轄구역 안의 淨化槽 汚水淨化施設 및 畜産廢水 淨化施設(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管轄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의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第4條(정화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管轄구역 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 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管轄 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管轄 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第5條(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區廳長은 警察廳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交通滯滯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 한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淨化施設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告示하여야 한다.

③ 夜間清掃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夏節期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第6條(糞尿의 수집운반) 區廳長은 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 구역 안의 糞尿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내지 15 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巡廻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第7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별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에서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강제징수)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노관련 영업 대행 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량	차고	신고용전화	기타
본노수집 운반업	본노의 수집운반에 중 사하는 인력 2인이상	• 법인:5,000만원 • 개인:8,0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5m ² 이상	• 흡인식차량 용량의 합 계 7500ℓ 이상(탈취 시설부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 (대당) -5톤미만:13m ² -5톤이상 10톤미 만:26m ² -10톤이상:36m ²	2대이상	• 소독조 1 조이상 • 종사원 목 욕시설
정화조 청소업	환경기사(수질분야)위생 사 또는 오물처리사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 에 종사한자 1인이상	• 법인:5,000만원 • 개인:8,0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5m ² 이상	• 흡인식차량 용량의 합 계30,000ℓ 이상(탈취 시설부착) • 오니처분용 화물차 1 대이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 (대당) -5톤미만:13m ² -5톤이상10톤미만: 26m ² -10톤이상:36m ²	2대이상	• 소독조 1 조이상 • 종사원 목 욕시설

[별표1]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8L	218	
정 화 조	기본	0.75m ²	16,840	
	초과	0.1m ² 당	1,100	
	야간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별표3]

분뇨 자가 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기술능력	차량	차고	기타
분뇨자가 수집운반 업	분뇨의 수 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 상	수거대상물량을 고려 하여 흡인식 차량 1대이상 차량확보용 량 1,000L이상 흡 인식 차량에는 탈취 시설 부착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대당) • 5톤이상 13m ² • 5톤이상 10톤미만 26m ² • 10톤이상 36m ²	소독조 1조 이상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되 합산한 과태료의 금액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어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다액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한다.

라. 제가호 내지 제하호의 개별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한다.
마. 제가호 내지 제하호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계속

2. 법 제58조제1항 관련(100만원 이하)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위반자				
(1) 오수정화시설 B.O.D(mg/L)				
(가) 1일 처리용량 100m ² 미만:100초과	10	20	50	100
(나) 1일 처리용량 100~200m ² 미만:80초과	20	50	100	
(다) 1일 처리용량 200m ² 이상:60초과	50	100		
(2) 정화조 B.O.D제거율(%)				
(가) 처리용량 200m ² 미만:50%미만	10	20	50	100
(나) 처리용량 200m ² 이상:50%미만	20	5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B.O.D(mg/L)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자:150초과	5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자:1500초과	20	50	100	
나.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 시설의 미 신고자				
(가) 1일 처리용량 200m ² 미만	20	40	6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² 이상	30	60	100	
(2) 정화조의 미 신고자				
(가) 1일 처리용량 200m ²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² 이상	20	40	60	100
다. 법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사용한자.				
(1) 오수정화시설의 사용				
(가) 1일 처리용량 200m ²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² 이상	20	40	60	100
(2) 정화조의 사용				
(가) 처리용량 200m ² 미만	5	10	20	30
(나) 처리용량 200m ² 이상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가) 1일처리용량 5m ² 미만 (나)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자.				
(1)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 1일처리용량 200m ² 미만 (나) 1일처리용량 200m ²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2)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가) 처리용량 200m ² 미만 (나) 처리용량 200m ² 이상	20 20	40 40	60 60	5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 1일처리용량 5m ² 미만 (나)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자				
(1) 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자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200m ²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²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200m ² 미만 2) 처리용량 200m ²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 1일처리용량 5m ² 미만 2)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2)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자 (가) 1일처리용량이 200m ²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1) 년1회 측정 2) 미측정	10 20	20 40	30 60	5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나) 처리용량이 200m ² 이상인 정화조				
1) 년1회 측정	5	10	20	30
2) 미측정	10	20	30	50
(다)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20	40	60	100
(3)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다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200m ² 미만	50	100		
2) 1일 처리용량이 200m ² 이상	1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200m ² 미만	20	50	100	
2) 처리용량 200m ² 이상	50	1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 1일처리용량 5m ² 미만	50	100		
2)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	100			
(4)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자	10	20	30	50
(5)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자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200m ² 미만	10	20	30	30
2) 1일 처리용량이 200m ² 이상	20	40	60	1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200m ² 미만	5	10	20	30
2) 처리용량 200m ² 이상	10	20	30	5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 1일처리용량 5m ² 미만	10	20	30	50
2) 1일처리용량 5m ² 이상	20	40	60	100
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사용한자				
(1) 설치 또는 변경허가 대상	50	100		
(2) 설치 또는 변경 신고대상	30	60	100	
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을 위반한자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분뇨 수집 운반업자	30	60		
(2) 설치 또는 변경 신고대상	50	100		
아. 법 제35조제6항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 요금을 정수한 자	20	50	100	
자.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1) 10일 이내 초과	10	20	30	50
(2) 10~20일 이내 초과	20	40	60	100
(3) 20~30일 이내 초과	30	60	100	
(4) 30일 이상 초과	50	100		
차.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관리인의 준수 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카.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자	10	20	30	50
타. 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30	50	100
파.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10	20	30	50
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자				
(1) 보고하지 아니한자	20	40	60	100
(2) 허위 보고한 자	30	60	100	

[별지 제1호서식]

분노 자가 수집운반업 신고필증

신 청 인	상 호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영 업 의 소 재 지				
영 업 의 종 류				
사 무 실 면 적		전 화 번 호		

오수·분노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수집운반업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199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